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에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0까지 차등 적용하던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앞으로는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30으로 적용하여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처와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실시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예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및 이 영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1.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2.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익침해행위의 조사 또는 수사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 3.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4.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 5. 내부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 ③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 ④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23조제2항 중 “별표 2”를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후단 중 “제22조제1항 단서”를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제23조제2항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 일부·추가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일부 지급을 우선 결정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26조의2 본문에 따른 보상금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은 같은		
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조 제1항 각 호 및 이 영 제21조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		부과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		
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익침해행위의 조사 또는 수사		그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		다.		
던 공직자(공직자였던 자를 포		1.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함한다)가 그 조사 또는 수사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		우		
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2.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다.		회복 또는 증대에 관한 법률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		관계가 확정된 경우		
거자료의 신빙성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를		
· 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		
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		
3.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고, 공익침해행위의 조사 또는		
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		수사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		
지 여부		사하였던 공직자(공직자였던 자		
4.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		를 포함한다)가 그 조사 또는		
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지한 정도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		

5. 내부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③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3조(보상금의 지급결정)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법 제26조의2 단서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우선

니한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내부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 ③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 ④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23조(보상금의 지급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금액이나 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지급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공익신고의 경합 시의 보상금 결정)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의 경우 각각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익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22조제1항-----

 -----.

제24조(공익신고의 경합 시의 보상금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22조제2항-----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7752